

가입시 유의사항

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보험계약 기본사항

- 본 보험계약은 (주)에드바이즈를 계약자, 단체규약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입니다.
- 본 보험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본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운영하여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.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(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)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.

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

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,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, 보험료인상,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
 - 풍수해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
 -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
 - 풍수해 지진재해로 생긴 화재, 폭발 손해(단,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)
 - 추위, 서리, 얼음, 우박으로 인한 손해
 - 축대,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(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)
 -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
 -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지진해일로 인한 손해
- "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(홍수통제소 포함) 기상특보(주의보경보)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전쟁, 내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
 - 풍수해 지진재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
 - 바람, 비, 눈, 우박 또는 모래,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 지진재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
 -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(만) 생긴 손해

설명의무 관련 안내

만약 중대한 고지사항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회사는 보험약관 제29조3항(계약의 해지)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약관 제24 조 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계약 전 알릴 의무
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(질문서를 포함합니다)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계약 이후 알릴 의무

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-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
-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
-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, 개축, 증축할 때
-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
-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

계약의 무효

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예금자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" 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
·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안내

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(사기)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전화: 국번없이 1332
- 휴대전화:(02)332
- 인터넷: <https://insucop.fss.or.kr>
- 또는 홈페이지(<https://s.or.kr>) 내 공제사기방지센터

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

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안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센터(1522-6545)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